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31

발의연월일: 2025. 2. 26.

발 의 자: 박해철 · 김문수 · 고민정

김 윤 • 박홍배 • 송옥주

송재봉 · 최민희 · 이광희

김승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「근로기준법」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, 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, 설치 장소 등에 관한 기숙사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2023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20. 2%가 판잣집, 비닐하우스, 컨테이너 등 거주용도가 아닌 열악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 또한, 최근에도 외국인노동자가비닐하우스 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등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, 사용자가 외국인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때 기숙사 제공 여부 및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

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도록 하고,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숙사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된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, 기숙사 제공 기준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(안 제22조의2 등).

법률 제 호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7조의2(사업 또는 사업장 지도·점검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을 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·점검계획을 수립하고,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,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, 제22조의 매른 기숙사 적정성 등 운영현황,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·점검을 하여야 한다.
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도·점검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현장 출입·조사또는 질문을 받은 사용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출입·조사·질문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, 조사자의 이

- 름·출석시간·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.
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 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·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③ 사용자는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때 기숙사의 제공 여부 및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숙사 정보의 사실 여부 및 「근로기준법」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숙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 - ④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9.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기숙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용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17조의2(사업 또는 사업장 지
	도·점검 등) ① 고용노동부장
	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
	고용관리 등을 하기 위해 매년
	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
	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
	대한 지도 • 점검계획을 수립하
	고,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
	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
	인근로자의 근로조건, 산업안전
	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, 제22
	조의2에 따른 기숙사 적정성
	등 운영현황, 그 밖에 관계 법
	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
	위한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
	<u>다.</u>
	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
	지도 • 점검을 위하여 사용자에
	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
	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
	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입하여
	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
	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

다.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현장 출입・조사 또는 질문을 받은 사용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출입·조사· 질문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 며, 조사자의 이름 • 출석시간 •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 · 점검을 실시한 결 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 한 사항 외에 지도 · 점검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- ·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③ 사용자는 제8조에 따른 외 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제1
- 제22조의2(기숙사의 제공 등) ① 제22조의2(기숙사의 제공 등) ① · ② (생 략)
 -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

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3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8. (생 략) <신 설>

<u>9. · 10. (생략)</u>

② (생략)

2조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때 기숙사의 제공여부 및 제2항에 따른 기숙사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숙사 정보의사실 여부 및 「근로기준법」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숙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(과태료) ① -----

- 1. ~ 8. (현행과 같음)
- 9.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기숙사 기준을준수하지 아니한 사용자

<u>10.</u>·<u>11.</u> (현행 제9호 및 제10 호와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